

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의안
번호 1396

제출년월일 : 2005. 11. .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□ 제안이유

- 엘리트체육을 육성 발전시킴으로써 우리시의 위상 제고 및 시민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탁구선수단에 남자 선수 보강 및 유도, 씨름, 펜싱선수단 창단에 따른 규정을 신설하고,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- 가. 직장운동부 설치종목에 유도, 씨름, 펜싱선수단을 신설 규정함(안 제2조)
- 나. 단원의 임용 및 승급심사, 단원의 징계의결, 단원의 재해보상 심의 등 선수단 인사관리를 위하여 “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인사위원회”의 근거 규정을 신설함(안 제5조)
- 다. 단원의 해임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현실에 맞도록 규정함(안 제8조)
- 라.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함(안 제10조)

□ 개정조례안 : 별첨

□ 관계법령발췌서 : 별첨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
-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17조

□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
□ 예산수반사항 : 779,230천원/년(인건비, 훈련비, 대회출전비 등)

- 유도(여) 222,440천원, 씨름(남) 221,870천원, 펜싱(여) 167, 550천원, 탁구(남) 167,370천원

□ 사전예고결과 : 의견없음

- 입법예고 : 2005. 9. 30. - 2005. 10. 20. (20일)

□ 기타 참고사항 : 별첨

- 경기도 직장운동경기부 설치현황

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『국민체육진흥법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산시청직장 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설치종목) 안산시청직장운동경기부에 육상, 탁구, 유도, 씨름, 펜싱선수단(이하 "선수단"이라 한다)을 둔다.

제3조(구성) ①선수단은 단장, 부단장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.

②단장은 업무담당국장, 부단장은 업무담당과장이 되며, 단원은 감독과 코치(이하 "지도자"라 한다) 및 선수로 구성한다.

③종목별 단원의 정수는 규칙으로 정한다.

제4조(임용) ①단원은 시장이 임용한다.

②단원 중 지도자의 임용기간은 2년으로 하되, 연장할 수 있으며 선수는 해임시까지로 한다.

③단원을 임용할 때에는 임용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임용계약서 서식 및 작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5조(인사위원회) ①단원의 인사관리를 위하여 안산시청직장운동경기부인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6조(임무) ①단장은 선수단의 업무를 총괄하고, 단원을 지휘·감독 한다.

②부단장은 단원 운영을 위한 행·재정적 실무를 지원하며, 단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감독은 단장의 지시에 따라 선수를 지휘·감독하여 훈련 및 경기를 총괄하고, 우수 선수를 발굴 육성해야 한다.

④코치는 감독을 보좌하며 감독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7조(단원의 자격) 단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.

제8조(해임)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해임할 수 있다.

1.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
2.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는 자
3.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하는 자
4. 경기성적이 극히 부진하여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
5.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선수단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자
6. 단원 스스로 사직원을 제출한 때

제9조(겸직금지) 단원은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.

제10조(복무 및 훈련) ①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「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」를 준용한다.

② 단원의 훈련은 합숙훈련과 비합숙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화훈련, 전지훈련, 특별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11조(보수등의 지급)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 및 훈련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2조(포상금) 경기도체육대회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및 그 지도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3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①(**시행일**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**경과조치**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설치·운영중인 육상 및 탁구선수단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.

소관 실·과		체육청소년과장
임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체육청소년과장 민 화 식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체육진흥담당 황 준 하
	담당자 성명·전화	이 은 영 (행정 2149)

□ 관계법령 발췌서

○ 국민체육진흥법[일부개정 2004.10.16 법률 7234호]

제10조 (직장체육의 진흥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직장체육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② 직장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동호인조직과 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직장인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의 육성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
③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에는 직장인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의 지도·육성을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한다.

④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(이하 "정부투자기관"이라 한다)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에는 1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·운영하고 경기지도자를 두어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⑤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체육에 관한 업무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)이 이를 지도·감독한다. <개정 1997.12.13, 2004.10.16>

○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[일부개정 2005.4.27 대통령령 18810호]

제17조 (직장의 체육진흥을 위한 조치) ① 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동호인조직과 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생활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할 직장은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1천인 이상인 국가기관·공공단체로 한다.

②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투자기관외에 1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하고 경기지도자를 두어야 할 직장은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1천인 이상인 공공단체로 한다.<개정 1999.2.5>

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직장이 지역을 달리하여 사무실 또는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생활체육지도자·운동경기부 및 경기지도자를 1개의 사무실 또는 사업장에만 배치 또는 설치할 수 있다.

④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직장과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·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경기지도자의 배치를 면제할 수 있다.
<개정 1999.2.5, 2005.4.27>

1. 삭제 <1999.2.5>
 2.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공익법인으로서 자체수입보다 지원금·찬조금·기부금 등 외부지원에 의존하여 운영되는 법인
 3.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정부투자기관
 4. 그 밖에 경영악화로 인한 인원감축 등 직장여건상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인정하는 직장
-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의 장은 운동경기부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을 위한 시설의 제공 및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하며, 연 1회이상 직장체육대회 및 직장대항 경기대회를 개최하여야 한다.
- ⑥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동호인조직과 운동경기부를 설치하고 생활체육지도자 및 경기지도자를 둔 직장의 장은 1월이내에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 운동경기부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폐지·변경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.